

조문 별 제·개정이유서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대상국가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24호)

가. 제·개정 이유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 시 협정문 내용에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의 이행을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한-에콰도르 SECA(협정문 제7.1조¹⁾ 및 제7.3조제1항²⁾) 에 따라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대상국가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의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에콰도르공화국과는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 시, WTO 규정이 아닌 각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된 수준에 따라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행

* 양자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1) 한-에콰도르 SECA 제7.1조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보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금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한-에콰도르 SECA 제7.3조제1항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추가(안 제24조제16항제17호)

가. 제·개정 이유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 시, 당사국과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바, 이의 이행을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한-에콰도르 SECA(협정문 제7.2조7항³⁾)에 따라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의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 기간이 1년이 넘어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규정을 반영함에 따라,
- 우리 수출기업들도 상대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받을 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발생

3. ‘에콰도르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한 대상국가에 추가(안 제24조의2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한-에콰도르 SECA’의 협정 체결 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을 배

3) 한-에콰도르 SECA 제7.2조제7항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의 이행을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한-에콰도르 SECA(협정문 제7.5조제1항4)에 따라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시 에콰도르산에 대해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의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에콰도르공화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 에콰도르공화국을 WTO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에서 배제가능
- 국내 수출기업들도 에콰도르공화국으로부터 다자세이프가드조치 건에 대해 동등한 적용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4) **한-에콰도르 SECA 제7.5조제1항**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